

---

# **스토킹 범죄예방**

## **교육자료**

---



**경찰청**

# 스토킹이란?

- 스토킹(Stalking) 표현은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동사 'Stalk'에서 유래

⇒ 학술용어, 일상적 표현으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

- (사전적 정의)

특정 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쫓아다니며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 ·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

# **스토킹처벌법 제정**

**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 
발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 
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**

**'21.10.21. 시행**

# 법률 상 정의 및 벌칙 1

- **스토킹 행위 :**

상대방의 **의사에 반하여** 정당한 이유 없이 **상대방 또는 동거인, 가족**에 대하여 **다음 행위**로 상대방에게 **불안감 또는 공포심**을 일으키는 것

- 
-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  - ②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  - ③ 정통망 이용해 물건·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을 도달
  - ④ 주거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
  - ⑤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
-

## 법률 상 정의 및 벌칙 2

-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⇨ **스토킹 범죄**
- 스토킹 범죄 시 **3년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**

※ 흉기·위험한 물건 등 휴대·이용 시 5년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
학교폭력예방법 상 ‘**따돌림**’ 및 ‘**사이버 따돌림**’이 스토킹 행위 중  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**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음**에 유의!

**따돌림** |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 
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(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)

**사이버  
따돌림** | 인터넷,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, 반복적으로  
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 
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(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3호)

## 관련 사례 I

- 우연히 알게 된 A를 만나려 집앞에 찾아가 A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계속 지켜보는 경우
- 교제하던 이성친구 B로부터 ‘이제 그만 만나자. 연락 하지 말라’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B에게 계속해서 걸쳐 전화를 걸고, 페이스북 등 SNS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

## 관련 사례 II

- 좋아하는 이성친구 C의 교실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C가 원치 않는 꽃이나 선물을 놓아두는 경우
- D의 같은반 친구에게 D의 전화번호를 요구하며 만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(D에 대한 스토킹행위는 아니지만 D의 같은반 친구가 불안감, 공포심을 느낀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)

## 관련 사례Ⅲ

-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 E의 집 앞에 계속 대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
- 같은 학교 학생 F를 괴롭히기 위해 계속 쫓아다니면서 F의 집, 학교주변 벽에 낙서하는 경우

## 예방·대처 요령

단순히 길을 따라오는 행동 이외 사이버 상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 
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**상대방의 반복된 행위로** 인해  
**정신적·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**

**스토킹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담임선생님이나  
학교전담경찰관(SPO)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**

**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 
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**

# 신고·제보 시 보호·지원

- 신변보호 제도

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△거주지·학교 주변 맞춤형 순찰△피해자 정보 112시스템 등록 △위치추적장치(스마트워치) 지급 등 맞춤형 보호조치 가능

- 수사 상 보호제도

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 할 수 있고, 가족 등 자신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음

# 신고·제보 시 보호·지원

- 법률 지원

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및 변호사의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가능

- 사안별 맞춤형 전문기관 연계

**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**

- △ 여성긴급전화 1366(위기개입 서비스)
- △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(상담·일시보호)
- △ 스마일센터·해바라기센터(심리전문가 상담)
- △ 경제적 지원(긴급복지 지원제도) 연계

---

**학교폭력 신고 · 상담은  
117**



**경찰청**